

7. 土地收容法施行令中改正令(案)立法豫告

建設部公告 第1993-17號 1993. 1.28

1. 개정의 취지 : 채권보상의 대상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공익사업이 원활히 수행되고 채권보상이 보다 원활히 촉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.

2. 개정안의 주요내용 :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 또는 비업무용토지로서 보상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 채권으로 보상하게 되는데 채권보상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1억원에서 3천만원으로 하향조정함.

3. 의견제출 :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3년 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부장관(참조 : 토지정책과장, 전화번호 : 500-2849, 2851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- 나. 주소,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)

씨앗뿌린 2백만호 열매맺는 내집의꿈